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081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기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23.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7. 21. 접수 제419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매매계약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를 위한 책임재산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05조, 제113조, 제59조, 제293조의3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후에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하여 관리인 내지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이를 수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인 회생절차의 성격 및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아닌 관리인 내지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등 참조). 이는 간이회생절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이 2023. 9. 27. 대구지방법원 2023간회단1013 간이회생사건에서 간이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개시결정 이후인 2023.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C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향

별지